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 도심 및 주택지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다음의 절차기준에 따라 설치

나.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중복결정하고 주차장 설계시 지상부 공원의 조성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도록 하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

※ 지하주차장 설계시 지상부 노출부분에 대하여 공원관리부서와 사전협의

다.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

1) 일정면적(가능한 3,000㎡) 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 되어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 검토

- 면적이 협소(3,000㎡미만)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주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 관리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다만, 공원의 입지가 경사면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어,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상과 분리·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공원 본래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3,000㎡미만 공원도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

※ 공원내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시는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

2) 공원지하에는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지상부는 현재의 공원상태보다 수준을 향상시켜 주차장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조성한 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3) 지하주차시설의 최상단부는 사질양토 등으로 1.5m이상 충분히 복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수목생육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4) 주차장의 모든 시설(주차관리실,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등 부대시설 포함)은 지하에 한하여 설치. 단, 지상부 노출이 불가피한 시설(환기구, 주차장 출입구, 피난계단 등)은 공원면적의 잠식 및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성토·덩굴류 차폐식재·돌출부위의 환경조각화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요소를 완화시키는 기법 적용
- 5) 공원이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예 : 출입구 옹벽 낙상, 차량출입시 안전도, 매연 처리 등)
- 6) 주차장 출입구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이내의 도로부분에 설치할 수 없음(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 7) 기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